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20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김위상・이달희・임이자

김선교 · 김승수 · 이인선

구자근 · 서범수 · 송석준

박충권 · 김용태 · 우재준

박성훈 • 이종배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 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 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3조 등). 법률 제 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 1항제1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넘기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우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78조제13호 중 "제53조제7항"을 "제53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 개선명령 등) ① ~ 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 른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비점오염저 감시설을 설치 하여 그 소유권 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넘기는 경우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⑧ -----제7항-----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 개

선을 명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 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 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 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 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 · 인수관리시스 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 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
<u>⑨</u> ~ <u>⑪</u> (현행 제8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
세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u>제53조제7항</u>
1. ~ 6. (현행과 같음)